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4월 22일 평택항의 이선호군 사망사고, 5월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 5월 12일 롯데 위커파크, 5월 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 5월 24일 인천 남동공단 5인미만 사업장, 5월 26일 세종시 쌍용C&B 화물노동자, 5월 27일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5월 29일 아산 자동차부품공장, 5월 30일 울산 고려아연 등 고 이선호군 사망이후에도 지난 주 4일까지 5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속보)
- 이렇듯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이선호군 마저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및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산재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2천만 노동자의 분노를 안고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에 연일 계속되는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와대에 민주노총 요구안을 전달 했습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 노정교섭
 - * 민주노총-노동부 비상대응(점검)팀 가동
- 중대재해사업장 (원청)사용자 구속!
- 노동자·시민참여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작업중지권 즉각 보장! 등 실효성있는 비상조치
- 근본적 제도개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유족발언 : 고 이선호님 아버지
-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 연대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입장발표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 질의응답
- 민주노총 요구안 전달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끝>.

[붙임1]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근본대책과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요구한다

평택에서 당진에서 울산에서 세종에서 인천에서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질식해서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들의 절망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노동자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 앞에서만 머리를 조아리는 기업, 앵무새처럼 재탕 삼탕의 형식적 대책만을 발표하는 정부, 최고 책임자 구속은 커녕 노동자 과실 찾기에 급급한 검찰과 법원은 이 처참한 죽음의 공모자이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라며 ‘임기 내 사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미 이행 불가로 판명이 났다. ‘도대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느냐’ 는 이선호 노동자 아버님의 절규는 우리 모두의 분노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발주처의 공기단축, 2인1조 등 적정인력 위반, 장시간 노동, 기업과 유착되어 있는 부실감독, 반복되는 법 위반과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것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일선 현장과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를 듣는 최소한의 절차와 참여도 없이 일방적인 탁상행정만 반복되고 있다. 후안무치한 경제단체들은 예방을 위한 투자와 조직 정비는 커녕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이에 화답하고자 눈치 보는 정치권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오늘 우리는 당장의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중대재해 사업장 사용자 구속, 노동자 시민참여 조사와 감독 및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 지시’ 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과 만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령 제정과 5인 미만 적용제외 폐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노동자 참여 보장 등 법 제도 개정’ 등 근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죽고 또 죽어나간 전쟁 같은 일터에서 사고로, 과로사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의 한과 유족들의 절망,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 중대재해사업장 사용자를 즉각 구속하라!
- 중재재해를 멈추기 위한 비상조치를 마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2021년 6월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비상조치 민주노총 요구안

1.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 노정교섭

2021년 3월까지 정부발표 산재사고사망 노동자는 238명. 4월과 5월에도 연속 발생.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사고사망 절반감소 대책” 기준으로 2021년 목표인 618명, 수정 목표인 705명은 불가능. 고 이선희 노동자 죽음이후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언론용일뿐 정부의 각종 대책은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며, 대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를 듣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음.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재해 대책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면담과 노정교섭을 요구함.

2. 중대재해사업장 (원청) 사용자 구속!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행된 사업장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음. 특별근로감독 강화와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의 반복은 대책이 될 수 없음. 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 사업장의 사용자(원청) 구속을 천명하고 이행해야 함.

3. 노동자·민간참여 사고조사 및 감독, 노동자 작업중지권 즉각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비상조치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감독이 형식적, 기술적 문제로 한정되고, 사고조사 및 감독에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거부하여 노동자 시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모든 작업 중지’ 를 발표함. 그러나,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대책논의에서도 노동계 참여는 거부되었고, 중대재해 작업 중지 범위는 오히려 후퇴했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처벌 조항이 없이 사문화 되고 있음. 노동자, 민간 참여 사고조사 및 감독과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즉각 보장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비상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함.

4. 근본적 제도개선

<p>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한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히 규정 ○ 2인1조등 위험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안전인력 등 적정인력과 예산 보장 명시 ○ 하청, 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 및 권한 보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 및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경영책임자 의무로 명시 ○ 직업성 질병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질병목록 전체를 명시
<p>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대상 확대 ○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 재해예방의 노동자 참여권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사외하청 등에 대한 규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동일하게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14조의 대표이사 보고제도 등의 적용대상 확대 ○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정비 ○ 작업 중지 명령제도 개정 등 감독행정 개혁
<p>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폐지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폐지 ○ 삭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복원 - 인과관계의 추정, 벌금 하한형 복원, 공무원 처벌 조항, 양형절차특례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와 시행령 위임사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하 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 하는 법령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법 4조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처벌 함. 처벌법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조항으로 하청, 특수고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조의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부여됨.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특수고용의 직종제한도 없고, 특수고용에 대한 원청 책임도 부여하고 있으며, 사외하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음.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근거	-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	-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4개 조항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속성이 있는 9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직종 제한 없음), 하청 노동자
	- 사망	- 사망, 부상, 질병
	- 사망에 대한 처벌규정	- 사망에 대한 처벌과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처벌이 다르게 규정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	- 동일 사업장이면 계약형식 무관하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로서 안전조치, 보건조치 책임.	- 계약형식에 무관하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경영책임자 의무 부여
	- 사외하청인 경우 22개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부여 - 장소 제공, 지배관리 등의 규정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부여 - 특수고용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부여
	- 사외하청인 경우 22개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부여 - 장소 제공, 지배관리 등의 규정	- 사외 하청인 경우 위험작업의 종류 제한 없음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기타	-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관리하도록 함.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사업은 통상 업종의 종류 구분, 사업장은 규모의 개념으로 정리 - 14조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의 이사회 보고 및 이행의무 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와 유사	-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적인 내용과 각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동시 부여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한 시행령

(1) 기본 방향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히 규정
- 2인1조등 위험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안전인력 등 적정인력과 예산 보장이 명시

- 하청, 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 및 권한 보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 및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경영책임자 의무로 명시
- 직업성 질병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질병목록 전체를 명시

(2) 경영책임자의 의무 관련 시행령 요구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4조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민주노총 요구 (안)

① 법에서 정의한 종사자 전체의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② 위험작업에 대한 2인1조 배치, 법에 명시된 안전인력 배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련 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에 배치

- 2인1조 근무, 위험작업, 노동시간 및 휴게 휴가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인력, 근속기간이나 야간작업등 단독 수행할 수 없는 작업 기준 마련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배치

- ③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전담인력 적정한 인원 확보 및 정규직 고용 및 권한 부여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종사자의 재해예방 참여 및 참여보장을 위한 인력, 예산, 시간 보장 및 노사 심의 의결사항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이 의무로 부여되어야 한다
- ⑤ 종사자의 위험작업에 대한 점검과 재해예방계획 수립,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 제도화 및 이행 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사자에 하청, 특수고용을 명시하고 있고, 법 5조에서 위탁, 도급, 용역의 경우에도 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 하청 공동사용자로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한 직접책임과 의무 부여>를 고 있음. 이에 하청, 특수고용관련 적정비용과 적정공기 보장등에 대한 간접적인 보장이 아니라, 하청과 특수고용을 포함하여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계획, 예방관리 체계가 구성 및 법 이행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주요 계기였던 구의역 김군, 김용균 노동자, 택배 과로사망의 핵심 원인은 적정인력의 문제임.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중대재해는 2인1조등 위험작업, 신호수 유도자 등 안전인력, 과로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인력의 보장이 주요한 핵심 의무임.
- 종사자들의 사전에 위험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가 무시되었던 사업장에서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음.
- 중대재해의 직접 당사자인 종사자의 사고조사, 재해예방계획 수립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제도화 할 뿐 아니라, 활동시간 및 권한을 보장해야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노사공동심의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이 명시되어야, 현장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이 수립될 것임.

○ 4조4항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민주노총 요구안

-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도급 재하도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여타 법령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함
- 정기적으로 제정, 개정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추가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함
-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조치와 관리감독상의 조치로 규정되어야 함.

[안전보건관계 법령 확대에 대한 근거]

- 처벌에 관한 법령이므로 법령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으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이에 최대한 명시되어야 할 법령의 목록을 제시하고, 추가 확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출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 매년 평균 추락사망이 350여명임에 비해 과로사망은 500명이 넘고 있음.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거나, 화물운송이나 택배 등 다른 법령에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휴게, 휴가 등의 위반에 따르는 과로사망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 명칭	과로사 관련 관계 법령 명시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제50조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12시간 초과금지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 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노동시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50조 위반, 59조 2항 위반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도 적용됨
근로기준법 일터괴롭힘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6조의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시행규칙 21조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p>보장할 것.</p> <p>- 분류작업 별도 인원 투입</p> <p>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p> <p>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p> <p>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p> <p>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p>제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p> <p>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p> <p>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p> <p>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p> <p>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p> <p>-중략-</p> <p>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p>
기타 항공등 산업관련법에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규정되어 있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 아니라 별도의 인사복무 규정이 적용됨

- 청소노동자의 증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폭염, 강풍, 폭우 등의 작업중지 등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음.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화학사업장의 폭발 사고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증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보수기간의 단축 금지, 심야시간대 공사, 보수 금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고, 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국가, 지자체 역할과 책무 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위원회, 취급시설 안전관리 위원회

-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 누구든지로 규정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

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32조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사업주의 고객에 대한 고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고, 금융기관 관련법에만 규정되어 있음
-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위험작업이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소프트 웨어 관련 법, 전기 통신 설비 관련법 등 개별 법령에서 도급, 재하도급 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있음.
- 도급, 재하도급은 그야말로 경영책임자의 경영방침이 작동한 것이고, 경영책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이에 도급, 재하도급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건설업 사고사망의 핵심적 대책인 발주처의 공기, 비용, 혼재작업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안전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발표하고 있음. 평택 항을 계기로 항만안전법도 제정을 앞두고 있음. 이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령이 계속 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와 추가 확대 조항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근거]

- 관리상의 조치라는 미명하에 보고, 점검 등등만을 명시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보고, 점검 등으로 처벌에서 빠져나갔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사업주> <사용자> <사업자> 에게 직접 의무이

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의무이행의 직접 주체에게는 사실상 불필요하고, 법 체계와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한 조항이 도입. 이에 별도로 세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부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관리 감독의 총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3) 직업성 질병의 범위 관련 시행령 요구 (안)

○ 처벌법 법령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중략-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부상과 질병에 대한 처벌은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일함.

○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을 목록화 한다
- 목록에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체 명시한다 (포괄적 인정기준 포함)
- 1년 이내 3명 발생에서 1년 이내의 기준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승인일 기준여부 쟁점)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직업성 질병 명시 여부 쟁점

[근거]

- 부상 및 직업성 질병의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중대 시민제해와 동일. 시민 재해의 질병은 종류의 제한이 없음. 위험요인 노출이 훨씬 더 많은 노동자의 직업병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한국의 직업성 질병은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해도 2019년 15,195명, 2020년 15,996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은 2019년 1,165명, 2020년 1,180명이다. 사고성 재해와 같이 직업성 질병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유형의 직업성 질병이 반복 발생하고 있고,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형해화 되어 있음.
- 직업성 질병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여러 법령에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이행을 위한 의무와 예방대책의 수립과 이행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처벌되는 것임. 직업성 질병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예방을 위한 법이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되어야 함.

[쟁점]

- 진보적 전문가 상당수가 질병의 특성과 보상 확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 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일부 질병은 비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직업성 질병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치료기간 6개월로 제한하여 제출하는 입장이 있음. 시민 재해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발생임.

질병의 종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관계 법령 명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53조 - 법130조 특검
2. 근골격계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12장 (656~666조)
3.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1/2/3/9/10장 (420조~511조,605~645조) - 법125/130조 작촉/특검 - 법104~118조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상
4.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4/5/6/7장 (512조~591조)

	- 법125/130조 작측/특검 (예외;야외 온열/한랭)
5. 호흡기계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6. 간 질병	- 안전보건규칙 1/2/3/4/5/ 6/7/9/10장
7. 피부 질병	(420조~511조,512조~591조, 605~645조) - 법125/130조 작측/특검
8. 림프조혈기계 질병	- 법104~118조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상
9. 직업성 암	
10. 눈 또는 귀 질병	
11. 감염성 질병	-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 안전보건규칙 8장 (592~605조)
12. 신경정신계 질병	- 법41조 감정노동 보호 - 안전보건규칙 669조 - 근로기준법76조의 2/3 (직장 내 괴롭힘)

(4) 안전교육 및 처벌사실의 공표

○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취지와 목표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적어도 중대재해 발생이후 1/4분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교육의 내용은 중대재해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이행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중대재해의 피해자 및 유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자세와 관점,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교육내용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제도의 취지 또한 기업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 사고발생 기업뿐 아니라 전체 기업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는 최소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1심 결과 이후에는

공표되어야 하고, 더 단축시켜야 공표제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아울러 공표 내용에는 원청 기업의 명칭이 명시되고, 재해의 발생 원인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술적 원인, 관리적 원인과 대책이 포함된 안전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 (안)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이하 건설공사등 적용유예 폐지

- 5인 미만 사업장 및 5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건설공사에 중대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및 적용유예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며, 법 제정의 취지인 산재감소와 역행하는 것임.
- 원청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수 십개 하청업체로 외주화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피하는 양태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중대재해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더욱더 후퇴시키는 것임

(2) 삭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복원

○ 인과관계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처벌이나, 각종 기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어려움은 <입증책임>의 문제였고,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동의청원 법안과 여러 법안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있었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삭제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계약 유치 경쟁이 성행하고, 검사, 판사, 노동부 출신 관료의 로펌 모시기가 횡행하고 있음. 처벌법 적용관련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법률대응으로 처벌에서 빠져나가 처벌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될 것임.
- 이에 일정한 요건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복원이 필요함.

○ 건설공사 발주처 공기단축, 장비 임대계약 적용

- 건설업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형식상 임대계약이지만 사실상 장비와 노동자를 같이 파견하는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임.
-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주요원인이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이었음에도 현행법으로

는 발주처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 건설업 중대재해의 25%가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이고, 이는 확대되고 있음. 이에 기계장비임대계약에 대한 원청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벌금 하한형 복원

- 하한형 형사처벌이 있지만, 판결의 상당수는 벌금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벌금에 대한 하한형이 삭제됨.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벌금조차 강화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고, 국민의 사회적 공분과 법률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임.
- 이에 벌금 하한형이 복원되어야 함

○ 공무원 처벌 조항

-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당진 현대제철이나 현대중공업의 연속 사망 등에서 정부의 부실한 안전감독과 사각지대의 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항에 ‘정부 및 지자체의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도입되었으므로,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공무원의 감독 및 조치의 엄격성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안전감독의 부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처벌조항이 도입되어야 함.

○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소송절차 참여 등 양형절차 특례

- 처벌법에 심리절차 특례로 피해자 심문이나 안전보건 전문가의 소송절차 참여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전문가 참여는 검찰과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추천하거나, 전문가 참여가 강제되는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수사, 기소, 소송과정에서의 직접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양형절차 특례> 조항이 복원 및 개정되어야 함.

3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개선 요구안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도급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를 전면 확대 개정해야 함.
- 2017년 삼성중공업, STX 조선의 중대재해 이후 노동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회>에서

는 첫 번째 권고로 <조선업 재하도급 금지를 조선업 관련법 제정,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권고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는 법 규정이고, 도급승인 대상은 시행령 사항임. 조선업 재하도급 금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 개정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2.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 재해예방의 노동자 참여권 보장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처벌조항이 없고,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작업거부권이 없음.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위험작업 지시에 대한 거부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음.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작업거부가 현실화 되도록 사업주 처벌,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안법 개정이 필요함.
- 노동자의 사업장 산재예방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로 규모별로 적용제외가 남발되고 있음.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과 더불어 산보위, 명감도 제외되어 있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가 없는 상황임. 학교는 3개 직종만, 공공행정은 6개 직종만으로 한정하는 등 동일 사업장에서도 차별 적용되고 있음.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음. 산보위, 명감의 전면 적용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의 참여권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포함하여 해석하면서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음.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 권한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질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도록 정부 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 산보위를 법제화 하는 등 본사와 지점을 아우르는 <사업> 단위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조사 참여,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노동자 참여 제도개선이 시급히 되어야 함.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연동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 특수고용노동자, 사외하청 등에 대한 규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동일하게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기준, 업종이나 직종 제한 폐지

-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도 포함 규정
- 업종별, 직종별 차등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아니라 전면 적용
- 사외하청에 대한 정의도 장소지정,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장소뿐 아니라 설비 등으로 확대하며 22개 위험작업이 아니라 전면적용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정의

나. 산업안전보건법 14조의 대표이사 보고제도 등의 적용대상 확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14조는 동일한 내용으로 상법상의 법인과 건설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영리 법인 등이 적용대상에서 차등을 갖게 됨. 이에 사업장 규모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사업장 전면 적용으로 개정되어야 함.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의 내용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개정이 필요

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 정비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은 직접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하고 있음.
- 하청과 특수고용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안전보건전문인력 선임기준이 개정되어야 함. 2021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위탁대행이 금지 되고 있으나, 300인의 기준이 원청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기준으로만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함
-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대상의 업종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겸직 금지등도 명시되어야 함. 아울러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정규직 고용에 대한 입법과 독립적인 권한 확보도 명시되어야 함.

4.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정 등 감독행정 개혁

- 사업장의 산재은폐가 횡행하고 있음.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로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된 지 3-4년이 되었으나, 위 조항에 근거한 처벌이 진행된 건수는 1-2건에 그치고 있음. 산재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대한 진정고발은 노동부와 경찰이 수사관할을 다투면서 진행되지 않고, 산안법의 산재은폐 형사처벌은 정부의 적극행정이 아니라, 진정고발에만 의존하고 있음. 산업안전감독관 직무 규정 개정으로 산재보험

법 위반 사업장과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은폐 직접수사 및 형사 처벌 강화가 필요함.

-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 중지 해제심의 위원회의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의 사업장 이행강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긴급조치로 ‘작업중지 관련 노동부 지침’의 개정과 시행이 필요함. 법제도가 개정되어야 함.
- 원청 사업장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작업중지의 해제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하청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연대책임 조항 등이 개정되어야 함.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업장의 무수한 산업재해 다발의 결과임. 그러나, 현행의 감독행정은 사고사망에만 집중되어 재해조사와 법 위반을 조사, 감독하고 있어 예방감독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정부 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감독행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
- 감독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 향만, 농업 및 어업등에 대한 대책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간 역할과 협업을 위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